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
가. 제정 이유

- 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 -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내용

-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 수입을 차단해 국내 생산 업체의 피해를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